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78418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78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나176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8 선고 2006가합552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

서울 강동구 ??

피고, 상고인 최??

고양시 일산동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나17682 판결

판결선고 2008.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수표의 배서인에게 수표 발행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수표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수표의 배서인이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앞에서 직접 수표에 배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수표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수표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수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수표의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수표의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 즉 수표의 배서인이 단순히 수표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수표의 배서인 사이의 관계, 수표의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수표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수표의 배서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수표의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수표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수표의 채무자로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표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1. 12. 22.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02. 3. 2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판시 선일자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발행·교부받았는데, 당시 ??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에 대한 배서를 요구하여 그 배서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민사상 보증한다는 의사로서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 피고 사이에 ??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속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수표 배서인의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양창수